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4일, 박성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준 의원)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위원 후보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히 하려는 개정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과 유사하게 조문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도 「유아교육법」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도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음.

따라서 「유아교육법」도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위원에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붙임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9조의8”을 “제19조의9”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 ----- ----- ----- ----- ----- -----제19조의9-----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 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 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 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 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생 략)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
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
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
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
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
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
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9조의4와 같음)

<u>제19조의5</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생략)	<u>제19조의6</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행 제19조의5와 같음)
<u>제19조의6</u> (유치원운영위원회 위 원의 연수 등) (생략)	<u>제19조의7</u> (유치원운영위원회 위 원의 연수 등) (현행 제19조의6 과 같음)
<u>제19조의7</u> (유치원회계의 설치) (생략)	<u>제19조의8</u> (유치원회계의 설치) (현행 제19조의7과 같음)
<u>제19조의8</u> (유치원회계의 운영) (생략)	<u>제19조의9</u> (유치원회계의 운영) (현행 제19조의8과 같음)